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1/17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2/17 |

개 정 이 력

| Date (개정번호) | 개정 전 | 개정 후 |
|--------------------------|--|--|
| '24. 01. 19. | | 최초 제정 |
| '24. 04. 16. (REV.01) | (신 설) | 제 5장 기타 제 23조 [문서관리] 1. CP운영팀은 CP 운영에 관한 ~ (중략) 2. 회사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 (중략) ① ~ ④ (중략) 3. CP운영팀은 위 2항에 ~ (중략) |
| '24. 08. 19. (REV.02) |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광양(주) (이하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1.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 (중략) 2.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 (중략)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비롯하여 ~ (중략) |
| | (신 설) | 제 3조 [용어의 정의] 6. ~ 13 ~ (중략) |
| | (신 설) | 제 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해임] 4. 자율준수관리자는 영업, 기획, 구매부서 등 ~ (중략) 5.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 (중략) |
| | 제 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CP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5. 최고경영진에게 독립적으로 보고 6. 법 위반·예방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요구 | 제 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신 설) 1. ~ 4. (중략) 5. CP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6.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7.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권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9. 최고경영진에게 독립적으로 보고 10. 법 위반·예방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요구 |
| | (신 설) | 제 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3. CP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임직원에게 설명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의무 |
| | (신 설) | 제 8조 [CP운영팀 조직] ⑦ ~ ⑩ (중략) 3. CP운영팀의 조직도는 [별표 1] CP운영 조직도에서 정한다. |
| | (신 설) | 제 10조 [독립성의 보장] 5.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 (중략) |
| | (신 설) | 제 3절 임직원 제 11조[임직원의 의무] 3. ~ 6. (중략) |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4/17 |

< 목 차 >

제 1장 총 칙


| | |
|----------------------|----------|
| 제 1절 목적 | 6 |
| 제 1조 [목적] | 6 |
| 제 2조 [적용범위] | 6 |
| 제 3조 [용어의 정의] | 6 |

제 2장 조직구성

| | |
|-------------------------------|-----------|
| 제 1절 자율준수관리자 | 7 |
| 제 4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해임] | 7 |
| 제 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 7 |
| 제 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 | 7 |
| 제 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 8 |
| 제 8조 [CP운영팀 조직] | 8 |
| 제 2절 대표이사 | 8 |
| 제 9조 [대표이사의 역할] | 8 |
| 제 10조 [독립성의 보장] | 9 |
| 제 3절 임직원 | 9 |
| 제 11조 [임직원의 의무] | 9 |
| 제 12조 [업무사전점검] | 9 |
| 제 4절 자율준수협의회 | 10 |
| 제 13조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선임] | 10 |
| 제 14조 [자율준수협의회 조직도] | 10 |

제 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 |
|-----------------------------|-----------|
| 제 1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 10 |
| 제 15조 [선언 목적] | 10 |
| 제 16조 [선언 방법] | 10 |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5/17 |

제 2절 CP관련 프로그램 운영 10

제 17조 [CP의 운영] 10

제 18조 [자율준수편람 작성 및 배포] 10

제 19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11

제 20조 [CP 위험성평가] 11

제 3절 감시체계의 운영 12

제 21조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12

제 4장 운영평가

제1절 추진단계 12

제 22조 [CP 운영 효과성 평가 및 정기감사] 12

제 23조 [포상] 12

제 24조 [위반 제재] 13

제 5장 기타


제 25조 [문서관리] 13

제 26조 [개정] 14

<부 록>

[별표 1] CP운영팀 조직도 15

[별표 2] 자율준수협의회 조직도 16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6/17 |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광양(주) (이하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지침(이하 "이 지침"이라 한다)은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비롯하여 회사의 윤리경영 및 상생 협력 관련 정책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모든 임직원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회사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C32(하도급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정거래에 관한 국내 제반 법규를 말한다.
2.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이하, "CP"라 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 감독, 점검 등 회사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구체적 행동요소와 실행 방안을 말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 회사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직원 :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CP운영팀 : 자율준수관리자를 필두로 CP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등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외부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결정할 권한을 갖는 최고 책임자를 의미한다.
7. 최고이사결정기구: 주주총회를 제외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회사의 최고 기관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를 의미한다.
8. 사전 업무협의 제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의 실행 여부에 관하여 협의체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7/17 |

9. 평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CP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 임직원들의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CP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조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10. 제재: 회사 임직원들에 의해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회사 임직원들에게 CP 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11. 포상: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고객, 관계사 및 협력사의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제공하는 혜택을 의미한다.
12. 자율준수편람: 회사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의미한다.
13. 문서관리: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서에 대하여 보관, 보존,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서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2장 조직구성

제 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4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해임]

1. 회사의 자율준수관리자는 사내 최고이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 결의를 통해 임원 중에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의 건을 승인하여 임명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다시 추천할 수 있다.
3.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관련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된 사실을 임직원과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영업, 기획, 구매부서 등 CP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되는 경우,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가 선임되기 이전까지 CP운영팀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CP운영팀원이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나 CP운영팀원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CP운영팀장이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 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CP 기획·감독·성과보고 운영 총괄
2. CP 관련 회사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예산 및 조직 편성, 관련 사항의 요구
3. CP 관련 사내 규정 등의 제·개정과 운영
4.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 CP 교육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8/17 |

5. CP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6.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7.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권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9. 최고경영진에게 독립적으로 보고
10. 법 위반·예방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요구

제 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3. CP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임직원에게 설명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의무


제 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항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CP의 운영 계획 수립 및 보고
2. CP운영 및 평가
3.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4. CP 관련 임직원 교육
5.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협조 및 지원
6. 내부 감시체계의 운영
7. 기타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8조 [CP운영팀 조직]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직속의 CP운영팀을 두며 CP 운영팀은 다음 각항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보좌
 - ② CP운영상의 실무 처리
 - ③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전파
 - ④ 공정거래 관련 교육 프로그램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⑤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 ⑥ 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
 - ⑦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CP 관련 사항의 보고 및 협의
 - ⑧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제·개정 사항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 관리
 - ⑨ CP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 활동
 - ⑩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CP운영팀의 담당자는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3. CP운영팀의 조직도는 [별표 1] CP운영 조직도에서 정한다.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9/17 |

제 2절 대표이사

제 9조 [대표이사의 역할]

1.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게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 10조 [독립성의 보장]

1.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본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본 규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5.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운영팀 소속 임직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제 3절 임직원

제 11조[임직원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을 받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부문별 법률 준수와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지침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 관련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또는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 CP운영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운영팀에서 실시하는 CP 교육(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회사 내 다른 부서가 실시하는 CP 교육을 포함한다)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직원이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거부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다른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10/17 |

임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의 이행을 강요받을 때에는 즉시 이를 CP 전담부서 또는 법무 담당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법무 담당부서는 이와 같은 제보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CP운영 팀에 알려야 한다.

6.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조[업무사전점검]

1. 임직원은 자율준수편람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이달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업무 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2. 자율점검 후 법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 CP운영팀과 사전업무협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CP운영팀은 사전업무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 4절 자율준수협의회

제 13조[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선임]

1.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 시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율준수협회의의 위원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정한다.
3. 자율준수협회의의 간사는 CP담당자로 한다.

제 14조[자율준수협의회 조직도]

자율준수협의회 조직도는 [별표 2] 자율준수협의회 조직도에서 정한다.

제 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 1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제 15조 [선언 목적]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제 16조 [선언 방법]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제 2절 CP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 17조 [CP의 운영]

1. CP운영팀은 CP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며, CP 활동 내역을 분기 1회 이상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11/17 |


2. CP운영팀은 CP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문서를 유관부서 임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8조 [자율준수편람 작성 및 배포]

1. CP운영팀은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에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CP운영팀에서 임직원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
3. 자율준수편람은 철강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및 필수 법규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고객, 협력사, 정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또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에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개요, 제재 기준, CP 운영 관련 사례, 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회사의 부문 및 업무 등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어야 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와 CP운영팀은 반기 1회 이상 자율준수편람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하여야 한다.
6. 자율준수관리자와 CP운영팀은 전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업무 환경 및 관련 정책의 변화, 회사 규정의 변경 등을 월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제 19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1. CP운영팀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담당 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P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① 부서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 ② 준법 뉴스레터 또는 준법 동향 리포트
 - ③ 기타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한 특강 등 교육
2. 사내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어려운 경우 공인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업에 의뢰할 수 있다.
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은 CP관련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육 참여율은 50% 이상 되어야 한다.
4. CP운영팀은 교육별 의무 수강 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의무 수강 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 미수료자 및 CP 위반자를 월 주기로 확인하고 특별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5. CP관련 교육 미이수자, 미수료자 및 CP 위반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특별 (보수) 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 CP운영팀은 효과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평가 및 설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확인된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12/17 |

제 20조 [CP 위험성평가]

- 회사는 부서별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준법 CP위반 Risk가 있는 이슈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 회사는 식별된 위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이슈사항에 대하여 비즈니스 중요도, 이해관계자 중요도에 따라서 준법 리스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리스크의 크기를 H (High), M(Medium), L (Low)로 구분한다.
- 회사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이해관계자 중요도가 모두 H (High)로 구분된 이슈사항에 대해 자가점검등을 실시하여 범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 CP관련 위험성 경감을 위해 사전업무협의 절차를 둔다.

제 3절 감시체계의 운영


제 21조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필수 법규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내부고발시스템은 기명 제보 뿐만 아니라 익명 제보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익명 제보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한다.
-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주관부서 소속 직원은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제보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CP운영팀은 접수된 내용에 대해 CP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실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제보 내용에 대한 현황 및 조사 결과를 연 2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한다.
- 상세한 내부고발에 관한 내용은 내부고발시스템 규정을 따른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부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조사팀 및 소속 조사원들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한, 반드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는 없고, CP운영팀 등 기존의 관련 조직을 활용하여 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 조사팀 및 소속 조사원들은 내부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실제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장 운영평가

제 22조 [CP 운영 효과성 평가 및 정기감사]

-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정기감사를 최소 연 2회 이상 시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 CP운영 효과성 평가 및 정기감사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13/17 |

3. 정기감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Risk가 높은 부서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가점검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3조 [포상]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되는 부서 및 임직원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CP를 모범적으로 실천 또는 확산에 기여한 임직원을 선정하여 연 4회 이상 표창장 및 포상금 (또는 포상 성격의 상품)을 지급한다
3.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준수 CP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상 혜택을 포함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에 공로가 큰 임직원
 - ② 이 규정에서 정한 평가 결과, 공정거래법 준수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현저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부서 및 담당자
 - ③ 공정거래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자
 - ④ 내부고발자
 - ⑤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CP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제 24조 [위반 제재]

1. 본 운영지침, 공정거래관련 법령 및 필수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책임자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운영팀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운영팀은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또는 필수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대표이사에게보고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운영팀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필수 법규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당해 임직원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요구할 수있다.
4.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운영팀의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법 위반자에 「공정거래자율준수 인사제재 규정」 제5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방법, 기준등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며 과실 정도와 그 영향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한다.

제 5장 기타

제 25조 [문서관리]

1. CP운영팀은 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분류하고 독립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CP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① 부서별 배포된 자율준수 편람
 - ② 부서별로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 ③ 부서별로 외부 거래(업무)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공문 등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14/17 |


- ④ 정기감사 수행 기록 관리는 타 감사기록과 독립적으로 관리
(계획서,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 ⑤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부서가 직접
수신한 문서 일체
3. CP운영팀은 위 2항에 따른 문서보관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미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미비점을 개선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4. CP운영팀은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를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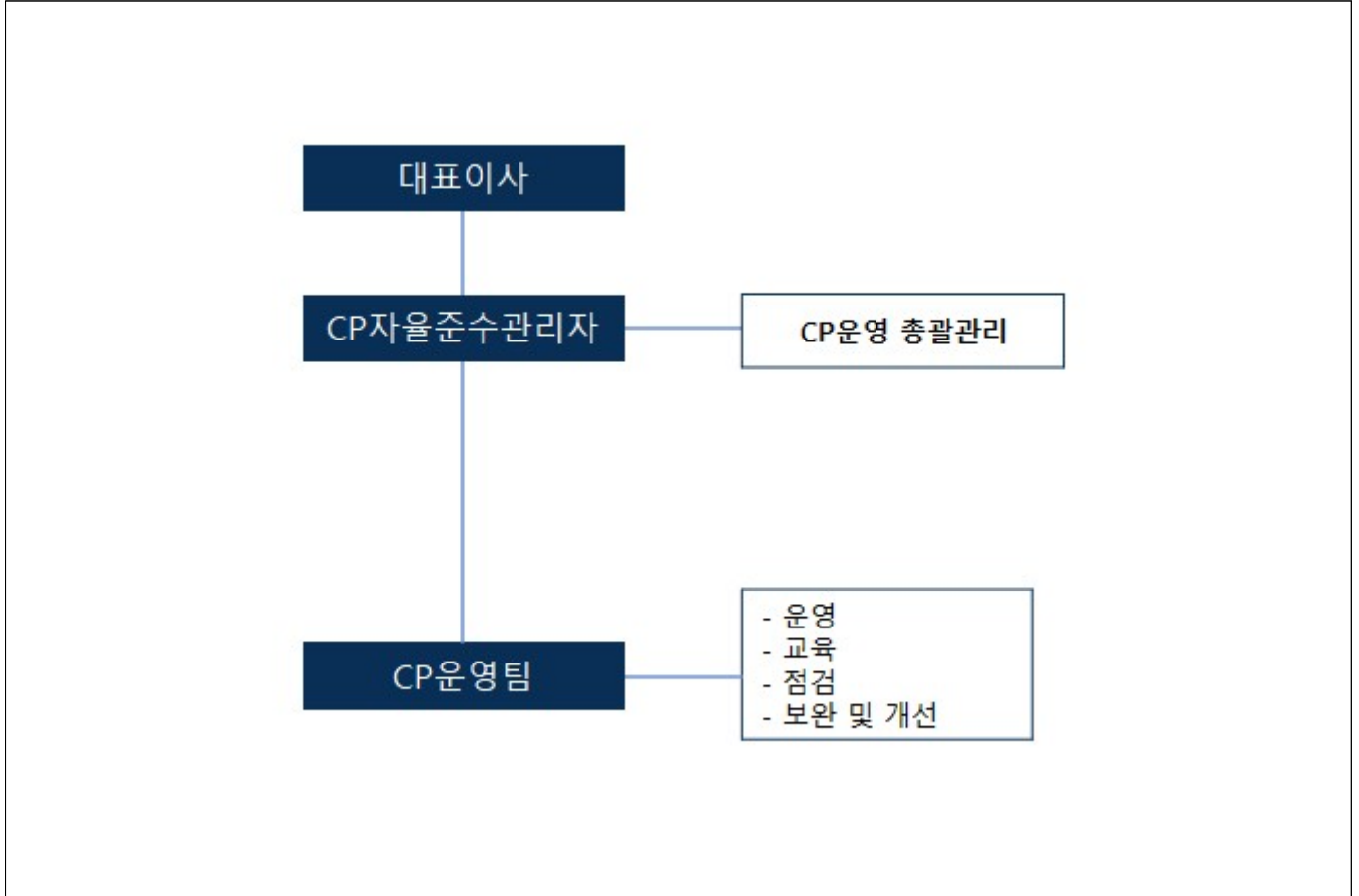
1. 회사는 반기 1회 CP 관련 사내 규정 등(자율준수편람은 제외한다)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P 관련 사내 규정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환경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2.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운영팀은 전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및 유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 일체를 회사 전 임직원에게 배포하고 교육·인터뷰등을 통해 임직원
의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CP 관련 사내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경우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회사의 새로운 사규 또는 매뉴얼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규정과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야 하며, 상충 시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24년 01월 19일 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24년 04월 16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기준은 2024년 08월 1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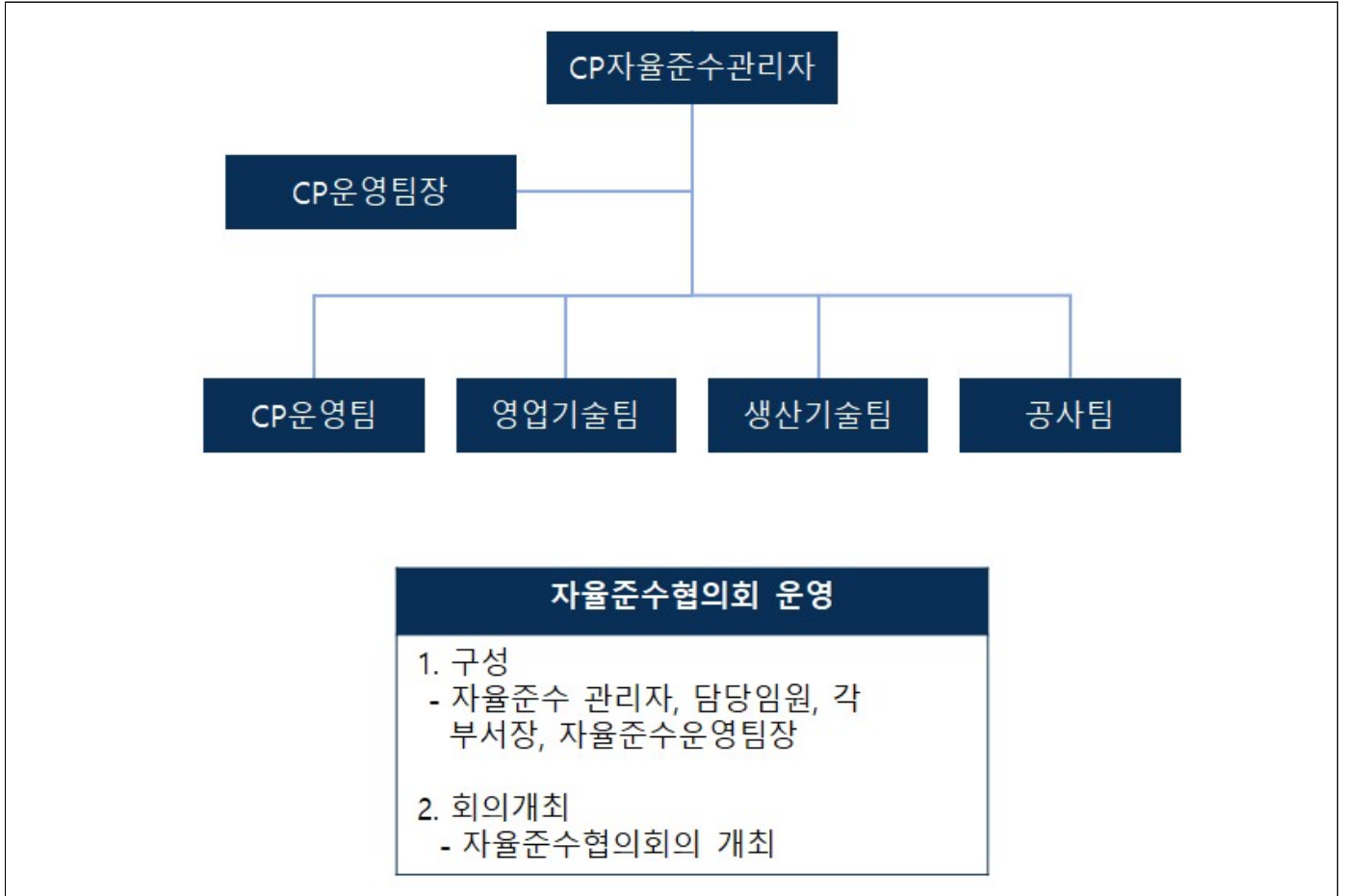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15/17 |


[별첨 1 CP운영 조직도]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16/17 |

[별첨 2 자율준수협의회 조직도]



| | | | |
|--|----------------------|--------|---------------|
|  광양주식회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문서번호 | GY-CP-2401 |
| | | 개정번호 | REV. 02 |
| | 운영지침 | 제·개정일자 | 2024. 08. 19. |
| | | 페이지 | 17/17 |

[별지 1 서식]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

본인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경영 실천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의 행동 규범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종준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행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시, 승인, 방조, 방임등을 하지 않겠으며,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공정거래 관련 부서에 제보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성실하게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명)